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17
----------	-------

발의연월일 : 2026. 1. 29.

발 의 자 : 서미화 · 최혁진 · 문진석
윤준병 · 허 영 · 김교홍
김병주 · 차지호 · 이학영
강준현 · 추미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 선출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성실의무 명문화 및 위원의 업무 방해 시 가중 처벌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 내·외부적 기능 저하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위원회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30조 및 제56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1명의”를 “13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4명”을 “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을 “인권”으로, “위원을”을 “제5조의2의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위원을”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출·지명할 때마다 추천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해당 위원후보자를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출·지명할 수 있는 자가 추천하는 4명

2. 시민단체(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3명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추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선출 또는 지명할 위원의 3배수 이상을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명단 및 이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가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위원의 의무)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2항 중 “출석과 3명 이상의”를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로 한다.

제26조의3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국가인권연구원) ① 인권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체계

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의 조사·권고 등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권연구원을 둔다.

② 국가인권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 침해의 구조적·제도적 원인에 대한 분석
2. 위원회의 권고, 의견 표명, 정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3. 국내외 인권 정책 및 제도의 비교·분석
4.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5. 새로운 인권 의제의 발굴 및 인권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 연구에 관한 사항

③ 국가인권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그 밖에 국가인권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국제인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그 규범의 내용 및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제출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를 “「대한민국헌법」에서”로 한다.

제50조의2 중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을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으로 한다.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위원일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지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선출·지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지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군인권보호관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u>11명의</u>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u>13명의</u> ----- -----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 -----.
1. 국회가 선출하는 <u>4명</u>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1. ----- <u>6명</u>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u>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u> 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④ ----- ----- <u>인권</u> ----- ----- ----- <u>제5조의2</u> <u>의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위원</u> <u>을</u>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u> <u>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u> <u>(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u>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출 · 지명할 때마다 추천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은 제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해당 위원후보자를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출 · 지명할 수 있는 자가 추천하는 4명

2. 시민단체(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3명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추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생 략)	⑥ 추천위원회는 선출 또는 지명할 위원의 3배수 이상을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명단 및 이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가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위원의 의무)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	--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② -----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

제26조의3(국가인권연구원) ① 인
권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위원
회의 조사·권고 등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권연구원을 둔
다.

② 국가인권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 침해의 구조적·제도적
원인에 대한 분석
2. 위원회의 권고, 의견 표명,
정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3. 국내외 인권 정책 및 제도의
비교·분석
4.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
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5. 새로운 인권 의제의 발굴 및
인권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
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 연구

<신 설>

에 관한 사항

③ 국가인권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그 밖에 국가인권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국제인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그 규범의 내용 및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제출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u>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u> 위원이 겸직한다.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 ② (생략) <u><신설></u>	<u>라 국회가 선출하는-----</u> -----.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위</u> <u>원일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u> <u>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	---